

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

2014. 4. 23(수)

건설교통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: 2014. 4. .
- 나. 제안자 : 안 병 배 의원
- 다. 회부일자 : 2014. 4. .
- 라. 상정일자 : 2014. 4. 23.(제215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)
 - 제안설명 : 안 병 배 의원
 - 검토보고 :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임 현 기
 - 질의 및 토론
 -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사유지의 과도한 규제·항만구역과의 역차별·타 지역에 비해 과도한 규제 등 인천광역시 항만시설보호지구 내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월 9일 「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」가 개정되었음.
- 위 개정 취지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증·개축이 가능하였던 기존 공장의 경우, 개정 규정(현행 조례)에 의하면 증·개축이 허용되지 않게 됨으로써 기존 공장에 대한 신규 투자는 물론이고 노후 시설 개선조차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됨.

- 수도권외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 신·증축을 규제하고 있는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제1항,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6조제1호에서도 과밀억제권역에서 기존 공장의 증설은 허용되고 있음.
- 따라서 항만시설보호지구 내 기존 공장의 증·개축 규제는 항만시설보호지구의 활성화라는 조례 개정 목적에 반하고, 수도권 규제 정책에도 벗어난 지나친 규제라고 판단되는바, 항만시설보호지구 내 기존 공장의 경우에는 공장 시설 유지에 필요한 증·개축이 가능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.

나. 주요골자

- 항만시설보호지구 내 건축 가능한 공장의 범위에 기존 공장의 증축·개축을 포함(안 제59조제3항제12호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제219회 정례회(2013.12)에서 심의하여 개정 공포한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조문을 삭제한 사유에 대한 설명 필요
- 타 시·도에 비하여 우리시의 경우 도시형공장,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, 유해물질 배출 등의 범위 내에 있는 일반공장으로 확대 완화 허용하고 있음.
- 예외 사항으로 모든 기존공장의 증, 개축을 허용 할 경우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혐오시설의 입지가 허용되어 이로 인한 민원 발생 소지가 있고, 지구 지정목적과도 맞지 않음.

- 입법 시 제출된 의견인 기존 공장의 노후 된 환경오염방지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위해 기존 건물의 모든 증, 개축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필요
- 아울러, 기존 공장의 노후시설 개선과 신규투자 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향후 지역의 여건 변화와 항만의 기능 변화 등을 고려한 항만기본계획의 변경 및 이에 따른 항만시설보호 지구의 해제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투자유치를 통한 원도심 활성화라는 장점과 환경저해 요인 등 일장일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, 환경적인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투자유치를 포기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.(정수영 의원)
 - ⇒ 환경적인 문제를 보완한다면 괜찮을 것임.
- 금번에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다면 투자유치가 무산되는 비용은 얼마인가?(이도형 의원)
 - ⇒ 600억원임.(투자유치담당관)
- 조례 개정이 안되어 증·개축이 불가능한 기업들이 신규투자가 어려우면 향후 공장이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(이도형 의원)
 - ⇒ 그럴 가능성이 있음.(도시계획국장)
 - ⇒ 이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(투자유치담당관)

5. 토론요지

- 가. 찬 성 : 이도형, 이재병, 김병철, 정수영 의원
- 나. 반 대 : 없음.

6. 심사결과

- 원안가결(재석위원 : 4명, 찬성 : 4명)

7. 기타

- 특이사항 없음

- 붙임 1.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2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 끝.

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

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9조제3항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도시형공장”을 “도시형공장, 기존 공장의 증축·개축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59조(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11. (생략)</p> <p>12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 17호의 공장(조선 및 선박관련 제조·수리시설, 수산물 가공·제조시설, <u>도시형공장</u>은 제외)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~ 바. (생략)</p> <p>13. ~ 19. (생략)</p> <p>④ (생략)</p>	<p>제59조(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11. (현행과 같음)</p> <p>12. ----- ----- ----- ----<u>도시형공장, 기존 공장의 증축·개축</u>----- -----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~ 바. (현행과 같음)</p> <p>13. ~ 19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